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 정 희 의원)

의안 번호	23-24
----------	-------

발의년월일: 2023. 3. .

발의자: 장정희,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백남환, 신종갑, 차해영, 한선미

### 1. 개정이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이후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역할 및 구성을 제고(提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연령대의 구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관계법령

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3. 17. ~ 3. 22.

나. 의견제출: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추진위원회”를 “조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령친화도시 구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인분야 전문가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u>추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조성계획의 수립</u></p> <p>2. · 3. (생략)</p> <p><u>&lt;신설&gt;</u></p> <p>4. (생략)</p> <p>제12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p> <p>가. ~ 다. (생략)</p>	<p>제1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u>조성위원회</u>) ----- ----- <u>심의·자문하기</u> ----- ----- <u>조성위원회</u>----- -----.</p> <p>1. <u>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u>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1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p>	<p><u>라. 노인분야 전문가</u></p> <p>제13조(위원의 임기) ----- ----- ----- . <u>다만, 공무원인</u> <u>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u></p>
---	--

#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2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이윤미
연 락 처	02-3153-8857